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공 무 원 여 비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비변상 등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상시출장 대상업무를 정비하고 국외 항공운임에서 정액의 표현을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20. ~ 9. 29.)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액으로 지급한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관용(官用)”을 “공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2배”를 “5배”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외 항공운임 지급표 (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항 공 운 임
별표 1 제1호	실비 (1등석)
별표 1 제2호	실비 (2등석)

별표 8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수령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8]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9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 방법
1. 수산 관계 공무원의 여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수산물 검역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 단속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다만, 동물·식물검역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 위치한 시·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여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2. 동물·식물검역 공무원의 여비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서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축산물검사 공무원의 여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4.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여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공안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5. 통계조사 및 통계지도 공무원의 여비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 여비를 지급한다.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기관 공무원의 여비	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 출장 공무원	
7. 농산물품질관리 공무원의 여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생략)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따라 <u>정액으로 지급한다.</u>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따라 <u>지급한다.</u>
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u>관용(官用)의</u> 차량-----	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u>공용의</u> 차량-----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 .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u>별표 1</u> 에 따른 ----- . ② (생략)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 .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u>별표에</u> 따른 -----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 부당 수령액의 <u>2배</u> 에 해당하는 ----- . ② (생략)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 부당 수령액의 <u>5배</u> 에 해당하는 ----- .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44) 201 - 8403